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21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정춘생 · 강경숙 · 김선민
김준형 · 백선희 · 서왕진
신장식 · 전진숙 · 황운하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전문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음.

최근 의료 · 법률 · 금융 등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얻는 사례가 늘고 있음. 또한, 청소년이 자살 방법이나 선정적 · 폭력적인 정보에 노출되면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임.

실제로 최근 일론 머스크의 xAI ‘그록’이 생성한 아동 · 청소년 성착취 사진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2024년 2월과 작년 4월 미국에서는 청소년이 인공지능 챗봇과 대화를 나누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작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살이나 성적 이미

지 관련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 했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구글, 오픈AI, 메타 등 AI 챗봇 제작기업 7곳에 대해 AI 챗봇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통하여 보건의료·법률·금융 등 전문분야의 결과물을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자 함(안 제31조제4항, 제32조제4항 신설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예외 등에”를 “예외, 제4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로 한다.

④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보건의료·법률·금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의 결과물을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살 및 자해의 예방, 과의존의 방지, 선정적·폭력적 내용의 차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

2항”을 각각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 무)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 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 품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보건 의료 · 법률 · 금융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문분야의 결과 물을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결 과물이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u>
<u>④</u>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 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 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u>예외 등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⑤</u> ----- ----- ----- ----- <u>예외, 제4항에 따른</u> <u>고지의 방법 등에</u> ----- ----- -.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 무)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 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u>

③ (생략)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 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 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 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 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 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②·③ (생략)	<u>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경우 자살 및 자해의 예방, 과의존의 방지, 선정적· 폭력적 내용의 차단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 ----- ----- ----- ----- ----- -----. 1. <u>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 2. <u>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 ②·③ (현행과 같음)
--	--